|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| **보도자료**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<br>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---|
| **2012년 5월 24일(목) 석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자료문의 : 불공정무역조사팀장 윤종욱, 전성규 사무관(02-2110-5584)<br>산업피해조사팀장 김남영, 이은정 주무관(02-2110-4954)<br>덤핑조사팀장 방순자, 최병달 사무관(02-2110-4961) | | |

# 제303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

## - 「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」 건은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예정

## - 『대만 및 중국산産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』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'12.5.23(수), 제303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LG전자(주)와 LG이노텍(주)가 (주)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「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」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였고

○ 『대만 및 중국産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』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1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(POY)의 덤핑방지 관세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(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)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

○ 업체별로 6.26%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하였음



○ 동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'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2.97~6.26%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음

□ 무역위원회는 그간 반덤핑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급감하고, 국내생산자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,

○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,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하였음

□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7월 국내생산자인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, 무역위는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국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

□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의류, 자동차내장제, 커튼, 침장류 등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시장규모는 '10년 기준으로 약 2,400억원 수준임

○ 아울러 금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됨

## 2 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인 A가 시계 수입 및 판매업자인 B 등을 상대로 신청한 『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건에 대해

○ 조사대상물품(시계 제품)이 신청인 A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 B 등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및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

□ 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,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하였음

<붙임1>

# 『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』 반덤핑 재심사 개요

## 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

○ 대상국 : 대만, 중국

○ 재심사대상물품 :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 (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)

* 주로 연신가공사, 혼섬사, 기타 혼섬사와 같은 가공사의 모사(母絲)로 의류 및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됨

## □ 국내수입·수요자

○ 수입자 : 신원합섬(주), 인비스타코리아유한회사 등

○ 수요자 : 대도화섬(주), 두성섬유(주), 마산실업, (주)범일섬유 등

## □ 재심사 경과

○ '11. 7. 19. :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가 재심사 요청

○ '11. 8. 24. : 재심사개시 의견 결정 (제293차 무역위원회)

○ '11. 9. 23. : 재심사 개시 공고 (기획재정부)

○ '12. 3. 20. : 공청회 개최 공고 (무역위원회공고 제2012-4호)

○ '12. 4. 25. : 공청회 개최

## □ 최종판정 결과

○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치 종료시,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

- 덤핑방지관세를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

**◆ 그 동안의 반덤핑조치 경과**

○ 원심조치기간 : '09.1.21 ~ '12.1.20(3년)

○ 조치내용 : 2.97%~6.26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* 대만(2.97~6.26%), 중국(6.26%)